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20년 1월 1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 12(일) 11:00부터 보도가능)

배포일시	2020. 1. 10.(금)	담당부서	바이오융합산업과
담당과장	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김재준 과장(044-203-4390)	담 당 자	노윤길 사무관(044-203-4392)
	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신행섭 과장(043-719-8041)		오경환 연구사(043-719-8044)
	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 이경일 과장(054-912-0701)		신연경 연구관(054-912-0716)

병원체 안전관리제도,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.

- 산업통상자원부·질병관리본부·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 "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" 책자 최초 발간 -

-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및 병원체별 허가·신고절차 안내를 위해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, 이하 '산업부')는 **질병관리본부**(본부장 정은경), **농림축산검역본부**(본부장 박봉균)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·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**'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' 책자를 최초로 발간**하였다.

□ 우리나라는 산업부, 복지부, 농림축산식품부가 **각각의 법률목적**에 따라 **병원체를 개별적으로 관리** 중으로,

○ 기업과 연구기관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**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가 적용되는 법률** 및 **안전·보안관리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**이 있었다.

부처	근거법률	관리대상	주요 관리내용
산업통상자원부	생화학무기 금지법	생물작용제 및 독소 67종	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입, 인수, 보유, 제조, 폐기 등
보건복지부 (질병관리본부)	감염병 예방법	고위험병원체 36종	고위험병원체의 분리, 이동, 반입, 인수, 보존 등
농림축산식품부 (농림축산검역본부)	가축전염병 예방법	가축전염병 병원체 200여종	병원체의 수입, 보유, 분리, 이동 등

□ 이에, 산업부, 질병관리본부, 농림축산검역본부는 **부처 간 병원체 안전·보안관리 제도 조화** 및 병원체 취급 기업·연구기관의 **제도 이행 편의성 제고** 등을 위해 **'병원체 안전·보안관리 협의체'*를 운영**해 왔다.

* 산업부·질병관리본부·농림축산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국가관리 병원체의 안전·보안관리 협의체

○ 특히, 이번에는 기업·연구기관이 **제도의 어려움으로 인해** 안전·보안관리 요구사항을 **이행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**하기 위해, 현행 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아 **책자 발간을 추진**하였다.

□ 따라서, 이번에 발간한 **'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' 책자**는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·연구기관들이 병원체 **안전·보안관리 법 제도와 세부사항**을 **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**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.

○ 본 안내서에서는 **생물작용제 및 독소, 고위험병원체, 가축전염병 병원체**에 대한 **수입(반입)허가, 이동·제조·보유·폐기 신고 등** 관련 법률 따른 **병원체 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**를 안내하고,

○ 병원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**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 항목**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.

□ 동 안내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**개별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**할 예정이고,

○ 상세한 내용은 **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(www.bwckorea.or.kr)**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【붙 임】 1.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(☎ 044-203-43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